

주요국 플라스틱 포장 사용 규제 동향

2024.10.



2024년 10월 21일자 매매기준율(하나은행) 적용

1 USD(달러) = 1,377.70원, 1 EUR(유로) = 1,494.66원, 1 GBP(파운드) = 1,794.26원, 100 INR(루피) = 1,639.00원

[목 차]

I. 북미 주요국 규제 동향	4
1. 미국	4
2. 캐나다	8
II. 유럽 주요국 규제 동향	12
1. 유럽연합(EU)	12
2. 영국	17
III. 기타 주요국 규제 동향	19
1. 뉴질랜드	19
2. 콜롬비아	21
3. 인도	23
IV. 결론 및 시사점	25
1. 국가별 규제 요약	25
2. 시사점	28

주요국 플라스틱 포장 사용 규제 동향

1. 북미 주요국 규제 동향

- (미국) 연방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폐지 및 각 주 정부의 플라스틱 포장 규제 시행 중
- (캐나다)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6종(쇼핑백·식기·식품서비스용 기구·음료용 링 캐리어·음료용 젓개·빨대) 사용 금지 및 2025년 9월부터 플라스틱 발생량 및 처리량 보고 의무화

2. 유럽 주요국 규제 동향

- (유럽연합)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7종(EPS 식품 용기 및 컵·커트러리·접시·빨대·음료용 젓개 등) 사용 금지 및 2024년 7월부터 일체형 병뚜껑 부착 의무화
 - * 2030년까지 회원국에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재활용 촉진 이행 요구
- (유럽연합 회원국)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대한 책임 이행 또는 생산자 책임 강화를 위해 세금 및 수수료 부과
- (영국)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및 세율 인상

3. 기타 주요국 규제 동향

- (뉴질랜드) 2022년 10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6종(음료용 젓개·PVC 식품 용기·폴리스티렌 포장재·발포 폴리스티렌 포장 등) 사용 금지(1단계), 2023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4종(농산물 봉투·접시 및 커트러리·라벨·빨대) 추가 사용 금지(2단계), 2026년부터 PVC 및 폴리스티렌 포장 사용 금지(3단계)
- (콜롬비아) 2024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6종(봉투·음료용 믹서 및 빨대 등) 사용 금지(1단계) 및 2030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8종(액체 용기·일회용 식기·채소용 스티커 등) 추가 사용 금지(2단계)
- (인도) 2022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식기류·사탕 스틱·아이스 크림 스틱 등) 사용 금지(1단계) 및 2022년 12월부터 두께 120마이크론 미만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2단계)

I. 북미 주요국 규제 동향

1. 미국

□ 2035년까지 연방정부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

- 2024년 7월 19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연방 조치 동원: 진행상황, 원칙 및 우선순위¹⁾」 발표²⁾
 - 플라스틱 생산에서부터 가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는 최초의 포괄적 및 범정부적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음
- 플라스틱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주요 원칙 및 우선순위를 설정

<표 1-1> 미국 연방정부의 플라스틱 오염 저감 원칙 및 우선순위

구분	주요 내용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 평가 및 감소	· 플라스틱의 9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유래하므로, 화석연료 추출 및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 저감을 위한 조치 시행 중 · 대응 조치 및 개선된 데이터 수집을 결합하여 플라스틱 생산이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해,
재료 및 제품 디자인 혁신	· 제품이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호환되고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혁신 ·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 개발, 재료 관리 혁신, 순환경제를 강화하는 재료의 추가 연구 및 개발 참여 등 포함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감소	· 불필요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재료,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재료의 초기 사용을 제한 · 특정 품목이나 오염 경로를 타겟팅하여 자체 운영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중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 개선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폐기물 관리 관행과 관련 인프라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 도입
플라스틱 오염의 포집 및 제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	·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유입되기 전에 플라스틱 포집을 개선하고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처리 및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도입

*출처: Mobilizing Federal Action on Plastic Pollution: Progress, Principles, and Priorities

1) Mobilizing Federal Action on Plastic Pollution: Progress, Principles, and Priorities

2)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Releases New Strategy to Tackle Plastic Pollution, Takes Action to Reduce Single-Use Plastics in Federal Operations,, 미국 백악관(www.whitehouse.gov)(2024.07.19.)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넷제로(Net Zero)³⁾ 달성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연방 식품서비스 운영, 이벤트 및 포장 부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폐지하고, 2035년까지 모든 연방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폐지할 계획

□ 주(州)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포장 사용 규제를 시행

- 캘리포니아·코네티컷·델라웨어 등 12개 주는 주 전체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
- 2014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일회용 비닐봉지(2.25 mils 이하의 두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9월 두께에 상관없이 모든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통과
- 뉴욕주는 2020년 10월부터 모든 소매업체에서 신선 과채류 및 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의 사용을 금지
- 이 밖에도 2019년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오리건, 버몬트 등에서 플라스틱 봉지 관련 규제 제정

<표 1-2> 미국 주별 일회용 봉지 관련 사용 규제(일부)

구분	규제 내용
캘리포니아	· 2015년 7월부터 대형 소매유통채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금지 · 모든 이용 가능한 포장용 봉지(종이, 재사용 가능,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 최소 10센트의 수수료 부과 · 2026년부터 모든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예정
뉴욕	· 2020년 10월부터 소매업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 소비자에게 종이 봉투 제공시 봉투당 5센트의 수수료 부과
오리건	· 2020년 1월부터 소매업체 및 외식업체에서 일회용 비닐봉지(4.0mil 이하) 사용 금지 · 소비자에게 종이 봉투 제공시 봉투당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종이 봉투는 최소 40% 이상 재활용 섬유로 구성되어야 함
메인	· 2021년 7월부터 소매업체 및 외식업체에서 일회용 비닐봉지(4.0mil 이하) 사용 금지 · 모든 이용 가능한 봉지(종이, 재사용 가능)에 대해 5센트의 수수료 부과
버몬트	· 손잡이가 꿰매진 폴리프로필렌 봉지 이외의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 종이 봉투에 10센트의 수수료 부과

*출처: 캘리포니아 SB-270 Solid waste: single-use carryout bags 및 SB-1053 Solid waste: recycled paper bags: standards: carryout bag prohibition, 뉴욕 NYS Bag Waste Reduction Act, 오리건 HB 2509, 메인 L.D. 1532, 버몬트 HB 113 (Act 69)

3)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중립'이라고도 함
(출처: 탄소중립 정책포털 www.gjhoo.or.kr)

○ (캘리포니아) 일회용 포장 생산업체의 책임 강화

- 2022년 6월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 생산자 책임법⁴⁾」이 통과되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및 식품서비스용 식기류의 재활용률 65% 달성 및 판매량 25% 감축을 목표로 2023년까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및 식품서비스용 식기류는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해야 함
- 또한, 일회용 포장이나 식기류 생산·유통·수입업체는 생산자책임기구(PRO)를 설립 및 가입하여 규제 준수 및 기록, 보고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생산자책임기구는 구성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매년 5억 달러(한화 약 6,887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캘리포니아 순환 경제 관리 수수료(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를 납부

○ (워싱턴) 주요 발생원에서 플라스틱 포장재 배출 규제

- 2023년 7월, 플라스틱 배출량이 높은 주요 공급원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플라스틱 오염 감축법⁵⁾」 발효
- 법률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워싱턴 해역의 부두·부표·보도 등 수상 구조물에 팽창 또는 압출 플라스틱 사용 금지 △2026년 7월부터 음수대 설치 건물은 음수대와 동일한 수의 병 충전소를 갖춰 재사용 가능한 병을 선택하도록 촉진 △2027년 1월부터(대형 시설은 2028년 1월부터)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건강·미용용품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불가

○ (워싱턴) 재활용 함량 규제 위반 기업에 벌금 부과

- 2023년부터 워싱턴 주 내에서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는 제품은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해야 하며, 생산자는 매년 4월 1일까지 주 내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및 재활용 플라스틱의 중량 보고
-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음료 제품은 연도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목표 준수해야 하며, 2024년 4월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35개 기업에 최대 6만 7,196달러(한화 약 9,256만 원)의 벌금 부과⁶⁾

4) 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SB 54)

5) Reducing plastic pollution(HB 1085)

6) Washington state fines 35 companies violating recycled plastic law, Packaging Dive(2024.10.07.)

<표 1-3> 미국 워싱턴주 품목별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 규제

품목명	연도별 달성 목표						
	2023	2025	2026	2027	2028	2031	2036
플라스틱 쓰레기 봉지	10%	15%	-	20%	-	-	-
플라스틱 음료 용기	15%	-	25%	-	-	50%	-
플라스틱 와인 용기(187mℓ)	-	-	-	-	15%	25%	50%
우유 용기	-	-	-	-	15%	25%	50%

*출처: 미국 워싱턴주 생태부(<https://ecology.wa.gov>)

- (뉴저지) 플라스틱 포장 제조업체는 최소한의 재활용 함량 준수
 - 2022년 1월 제정된 「뉴저지 재활용 재료법⁷⁾」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질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음료 용기 △유리 용기 △종이 및 플라스틱 봉지 △플라스틱 쓰레기 봉지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뉴저지 환경 보호부(NJDEP)에 등록하고 재활용 요구사항 준수

<표 1-4> 미국 뉴저지주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규제

구분	규제 내용
경질 플라스틱 용기	· 2024년부터 최소 10% 이상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3년마다 10%씩 늘려 2036년에는 50%까지 구성
플라스틱 음료 용기	· 2024년부터 최소 15% 이상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3년마다 5%씩 늘려 2024년에는 50%까지 구성 · 제품을 가열하여 살균 및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핫필(Hot Fill) 방식을 이용한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2024년부터 최소 15% 이상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3년마다 5%씩 늘려 2033년에는 30%까지 구성
유리 용기	· 2024년까지 최소 35% 이상 재활용 재료 사용 · 혼합 색상 컬릿(Mixed-Color Cullet)이 50% 사용된 유리 용기의 경우, 2024년까지 최소 25% 이상 재활용 재료로 구성
종이 봉투	· 2024년까지 최소 40% 이상 재활용 재료 사용
플라스틱 봉지	· 2024년까지 최소 20% 이상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며, 2027년에는 최소 40%까지 구성 · 8파운드(lb) 미만으로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플라스틱 봉지의 경우, 2024년까지 최소 20% 이상 재활용 재료로 구성
플라스틱 쓰레기 봉지	· 봉지 두께에 따른 요구사항 준수 · 두께 0.70~0.80mil: 2024년까지 최소 5% 이상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2027년에는 10% 이상 재활용 재료로 구성 · 두께 0.80~1.00mil: 2024년까지 최소 10% 이상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2027년에는 최소 20% 이상 재활용 재료로 구성 · 두께 1.00mil 이상: 2024년까지 최소 20% 이상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2027년에는 최소 40% 이상 재활용 재료로 구성

*출처: 뉴저지주 홈페이지(www.nj.gov)

7) New Jersey Recycled Content Law

2. 캐나다

□ 2022년 12월부터 특정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

- 2022년 6월 캐나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⁸⁾」을 통해 특정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규제 대상은 ①쇼핑백 ②식기 ③식품서비스용 기구(용기 등) ④음료용 링 캐리어 ⑤음료용 텀러 ⑥빨대 6개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해당
 - 100%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 외에도 다른 재료와 겹쳐진 형태와 같이 플라스틱이 사용된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 해당함

<표 1-5>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대상

규제 품목	설명
쇼핑백	· 사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부 또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제품
식기	· 포크, 칼, 숟가락 및 젓가락, 스포크(spork) 등의 형태로, 전부 또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제품 · 폴리스티렌 또는 폴리에틸렌을 함유하거나 가정용 식기세척기를 이용해 100회 세척한 후 물성이 변하는 제품
식품서비스용 기구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전부 또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제품 1)클램셸(Clamshell) 형태의 용기나 뚜껑이 있는 용기, 상자, 컵, 접시, 그릇 등의 형태 2)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및 음료를 제공하거나 운송할 목적으로 설계 3)발포 폴리스티렌 폼, 압축 폴리스티렌 폼, 폴리염화비닐, 탄화수소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의 불완전 연소를 통해 생성된 흑색 안료를 포함
음료용 링 캐리어	· 운반을 위해 음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변형 가능한 형태의 밴드나 링으로, 전부 또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제품
음료용 텀러	· 음료를 텀거나 혼합하는 용도 또는 음료가 뚜껑에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전부 또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제품
빨대	· 음료용 빨대 형태로, 전부 또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제품 · 폴리스티렌 또는 폴리에틸렌을 함유하거나 가정용 식기세척기를 이용해 100회 세척한 후 물성이 변하는 제품 · 주름빨대(flexible straws)의 경우 제조 및 수입은 금지되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

*출처: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

8) the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 2022년 12월 20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였으며, 2025년 12월 20일 수출 목적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조치까지 시행될 예정

<표 1-6>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유형별 규제 시행일정

구분	제조·수입 금지 (캐나다에서 판매 목적)	판매 금지	제조·수입·판매 금지 (수출 목적)
쇼핑백, 식기, 식품서비스용 기구, 음료용 젓개, 빨대	2022.12.20	2023.12.20	2025.12.20
음료용 링 캐리어	2023.06.20	2024.06.20	2025.12.20
음료 용기와 함께 포장된 주름빨대	N/A	2024.06.20	2025.12.20

*출처: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

□ 2025년 9월부터 플라스틱 포장 및 일회용 제품 관련 기업에 플라스틱 발생·처리량 보고 의무화

- 2024년 4월 캐나다 정부는 연방 플라스틱 등록부(The Federal Plastics Registry) 도입을 위한 정보 수집 공지 발표⁹⁾
 - 2018년 11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지방 및 준주 정부는 「캐나다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전략¹⁰⁾」을 채택하여 2030년까지 순환 경제 및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Zero)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자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조치를 시행

9) The Government of Canada requires producer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plastic they put on the market,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

10) Canada-wide Strategy on Zero Plastic Waste

- 플라스틱 수지·제품 등을 제조·수입·출시하는 기업은 매년 연방 플라스틱 등록부에 발생량·처리량 보고 필수
 - 「199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¹¹⁾」 46조에 근거하여, 플라스틱 수지 제조업체·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서비스 제공업체는 매년 제조·수입·시장에 출시하는 플라스틱의 양과 종류를 연방 플라스틱 등록부에 보고해야 함
 - 규제 적용기업은 크게 ①규정에서 정한 플라스틱 수지(Resins) 24종과 수지 공급원(Resin sources) 4종을 제조·수입·출시하는 업체 ②규정에서 정한 경질·연질 플라스틱 포장과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③산업 시설·상업시설·기관시설에서 포장 및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 ④규정에서 정한 플라스틱 수지 24종과 수지 공급원 4종과 관련하여, 화학적 재활용·퇴비화·매립 및 기타 소각 활동 등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을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 구분됨
 - 연간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00kg인 업체는 보고 의무 면제

<표 1-7> 캐나다 플라스틱 발생량 및 처리량 보고 대상 플라스틱 유형

수지(Resins) 24종 ¹⁾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기타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수지,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수지,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수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수지, 기타 폴리에틸렌 수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수지,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폴리프로필렌(PP) 수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수지, 폴리아미드(PA, 나일론) 수지, 기타 모든 열가소성 수지, 생물기반 열가소성 수지, 석유기반 생분해성 열가소성 수지, 페놀(PF) 수지, 요소포름알데히드(UF) 수지, 기타 모든 포름알데히드 기반 수지, 열경화성 불포화 폴리에스터(UPR) 수지, 열경화성 폴리우레탄(PU) 수지, 기타 열경화성 수지, 생물기반 열경화성 수지, 석유계 생분해성 열경화성 수지
수지 공급(Resin sources) 4종	순수 화석기반 수지, 순수 생물기반 수지, 재활용 수지(Post-consumer recycled resin, Post-industrial recycled resin)
경질·연질 플라스틱 포장	음료 용기, 식품접촉물질, 위험물질 포장재, 기타 포장
기타 플라스틱 제품 ²⁾	농업용 용기, 동물 위생제품 용기, 농업용 토트(tote) 및 드럼, 농업용 가방, 온실용 구조 플라스틱, 그물, 앵커, 부표 등

1) 북미제품분류시스템(NAPCS) 캐나다 2022 버전 1.0 기준

2) 농업 및 농식품 관련 플라스틱(일부)

*출처: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8, Number 16: GOVERNMENT NOTICES(2024.04.20.), 캐나다 정부 관보(www.gazette.gc.ca)

11) the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보고 의무 대상 기업은 온라인 포털 또는 지정한 생산자 책임조직(PRO)을 통해 ①발생·처리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수지의 총량(kg) ②총량 결정방법 ③행정정보(△업체 정보(이름·연락처·이메일·주소) △캐나다 연방사업자번호 △담당자 정보(이름·연락처·이메일)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캐나다 코드(해당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수지를 시장에 출시하는 주 및 지역 △참여하는 지역 EPR 프로그램(해당시) △참여하는 생산자 책임조직 등(해당시) 등) 제출
- 2025년 9월부터 플라스틱 관련 기업의 보고 의무화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
- 2025년부터 플라스틱 포장,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보고 의무화 규제가 시행되며, 플라스틱 제품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표 1-8> 캐나다 플라스틱 유형별 규제 시행연도

구분	수지(resin)	포장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농업 및 원예	어업 및 양식업
수지의 양(수입·제조·출시)	2026년	N/A	N/A	N/A	N/A
포장 및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수입·제조·출시)	N/A	2025년	2025년	2026년	2026년
시설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	N/A	2026년	2026년	2026년	2026년
수명 종료 시 수거되는 플라스틱의 양	N/A	2026년	2026년	2026년	2027년 이후
전환을 위해 보내진 플라스틱의 양	N/A	2026년	2026년	2026년	2027년 이후
폐기를 위해 보낸 플라스틱의 양	N/A	2026년	2026년	2026년	2027년 이후

*주: 농업 및 농식품 관련 규제 시행일정 발체

*출처: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

- 2024년 제조·수입·출시한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또는 폐기용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양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2025년 발생량은 2026년 9월 29일까지, 2026년 발생량은 2027년 9월 29일까지 보고

<표 1-9> 캐나다 플라스틱 발생량 및 처리량 보고 기한

플라스틱 발생·처리 시점	보고 기한
2024년 제조·수입·출시한 플라스틱 제품	2025년 9월 29일까지
2025년 제조·수입·출시한 플라스틱 제품	2026년 9월 29일까지
2026년 제조·수입·출시한 플라스틱 제품	2027년 9월 29일까지

*출처: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

II. 유럽 주요국 규제 동향

1. 유럽연합(EU)

□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재활용 촉진에 관한 규칙 채택

- 2024년 4월,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포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 채택¹²⁾
 - 유럽연합 내 포장 폐기물의 총량은 2009년 6,600만 톤에서 2021년 8,400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기준 188.7kg로 집계된 유럽연합 국민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2030년 209kg까지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유럽연합 의회는 지속 불가능한 포장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저감 목표가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로 설정되었으며, EU 회원국에 폐기물 발생 저감을 촉구
 - 「특정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침¹³⁾」에 따라 EU 회원국은 자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치를 채택 및 시행 중
- 포장 사용을 줄이고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 금지할 방침
 -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기 위해 운송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50%로 설정되었으며,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포장의 무게 및 부피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함
 - 2030년 1월 1일부터 ①가공하지 않은 신선 과채류용 포장 ②카페·레스토랑 등에서 소비하는 식품 및 음료 포장 ③개별 포션(조미료, 소스, 크림, 설탕 등) ④숙박시설용 소형 포장된 위생용품 ④15마이크론 이하의 경량 플라스틱 봉지 등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 금지
 - 뿐만 아니라,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일정 기준치를 넘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 금지

12) New EU rules to reduce, reuse and recycle packaging(2024.04.24.), 유럽연합 의회(www.europarl.europa.eu)

13)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 소비자 대상 재사용 및 리필 옵션을 장려하는 조치 시행 예정
 -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 포장(우유, 와인 등 제외) △운송 및 판매 포장 △그룹 포장(grouped packaging)에 대한 재사용 목표가 설정될 예정
 - 음료 및 테이크아웃 음식의 최종 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자체적으로 용기를 가져올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2030년까지 제품의 1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 형태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재활용 가능한 포장과 폐기물 수거·재활용 조치 도입을 위한 참여 촉구
 - 모든 포장재(경량 목재, 섬유, 코르크, 고무, 세라믹 등 제외)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2029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및 금속 음료 용기(최대 3ℓ)의 90%가 보증금-환급 시스템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별도로 수거되어야 함

□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규제 확대

- 2021년 7월부터 유럽연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디자인 규제 △회원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수거 목표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링 요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을 제정
 - 지침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발견되는 주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2021년 7월부터 금지하고 있으며, ①발포 폴리스티렌(EPS)으로 제조된 식음료 용기(뚜껑 포함) 및 컵 ②일회용 플라스틱 커트러리 ③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④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⑤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 텀러 ⑥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⑦일회용 플라스틱 풍선 스틱 등이 규제 대상에 해당

- 2024년 7월부터 3l 이하의 모든 음료 용기에 일체형 병뚜껑(Tethered Cap) 부착 의무화

<그림 II-1> 일체형 병뚜껑 예시



*출처: www.sustainableplastics.com, <https://tandobeverage.com>(검색일: 2024.10.21.)

□ 유럽연합 회원국 일부는 플라스틱 포장 제조·수입업체에 세금을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

- 2021년 1월,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에서 생산된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부과금 요구
 - 각 회원국은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kg 당 0.80유로(한화 약 1,196원)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수수료나 기여금, 조세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
- (독일) 2025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세금을 도입하여 2026년부터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
 -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¹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식품 용기 △봉지 및 필름 포장 △음료 용기 △음료용 컵 △경량 플라스틱 봉지 △물티슈 △풍선 △필터 담배 △폭죽을 제조·충전·판매·수입하는 업체가 세금을 부담함
 - 규제 대상 기업은 2024년까지 중앙 포장 등록부(ZSVR) 플랫폼 또는 연방 환경청에 등록해야 함

14) Gesetz über den Einwegkunststofffonds(EWKFond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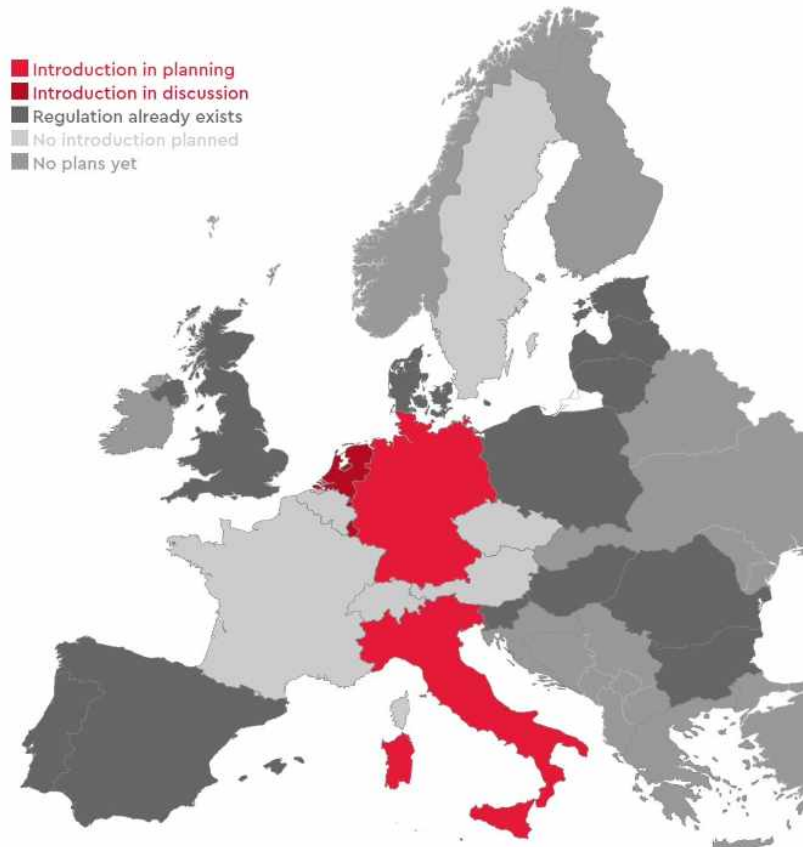
- (스페인) 2023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kg 당 0.45유로(한화 약 673원)의 세금 부과
 - 한 달에 5kg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납세 주체에 해당
- (포르투갈) 2022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세금이 도입되었으며, 2023년 9월 1일부터 알루미늄 포장에 대한 세금 도입
 - 2024년 국가 예산법에 따라 즉석섭취식품에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세금은 패키지당 0.30유로(한화 약 448원)에서 0.10유로(한화 약 149원)로 감소
- (이탈리아) 2026년 7월부터 kg 당 0.45유로(한화 약 673원)의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할 예정
 - 세금은 '합성 유기 중합체로 구성된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상품 또는 식품을 배송, 취급, 보호, 방지하기 위한 용도)'에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비EU산 제품의 경우), 구매업체(EU회원국산 제품의 경우)가 부담함
- (폴란드) 2023년 7월 일회용 플라스틱 보증금 환급 제도 도입
 - 일회용 또는 재사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료(3ℓ 이하의 일회용 플라스틱 병, 1ℓ 이하의 금속 캔, 1.5ℓ 이하의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 판매 시 보증금을 징수한 후 포장 반환 시 최종 소비자에 보증금 환급
- (네덜란드) 플라스틱 포장 기여금(Contribution) 징수
 - 네덜란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포장재(플라스틱 포장재 포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바 있음
 - 국가 차원에서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기여금 명목으로 kg 당 1.22~1.32유로(한화 약 1,824~1,973원) 징수(공식적인 세금은 아님)

<표 II-1> 네덜란드 플라스틱 포장 기여금 제도

구분	설명
납부 대상	· 네덜란드 시장으로 플라스틱 포장을 5만 kg 이상 반입하는 기업 · 수입 후 5만 kg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을 처리하는 기업
기여금	· 형태 안정성(dimensionally stable) 플라스틱: kg 당 1.22유로(VAT 별도) · 유연성(flexible shape) 플라스틱: kg 당 1.32유로(VAT 별도) ·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kg 당 0.015유로(VAT 별도) ·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kg 당 0.10~0.50유로 할인 · 일회용 플라스틱: 1,000개당 2.30유로 추가 징수

*출처: 네덜란드 기업청(<https://business.gov.nl>)

<그림 II-2> 유럽연합 회원국별 플라스틱 세금 도입 현황(2024.10.)



*출처: (검색일: 2024.00.00)

2. 영국

□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도입

- 영국 정부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지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제도 도입
 - 영국에서는 매년 약 5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은 플라스틱 포장으로 나타남
 - 플라스틱 포장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활용
-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수입할 경우 톤당 217.85파운드(한화 약 40만 원) 부과
 - 2022년 4월 도입 당시 톤당 200파운드(한화 약 원)에서, 2023년 4월부터 톤당 210.82파운드(한화 약 36만 원), 2024년 4월 1일부터 217.85파운드로 세율 인상
- 공급망 내에서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포장에 세금 부과
 -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포장)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공급망 내에서 사용되며, 단독 또는 다른 포장과 조합하여 사용. 상품을 담거나 보호·취급·제공·운반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해야 함(예. 생고기를 감싼 필름, 식품 보호 필름 등)
 - (소비자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포장)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포장으로, 상품이나 폐기물을 담거나 보호·취급·제공·운반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해야 함(예. 쓰레기 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및 접시, 자판기용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 포장재가 여러 요소로 구성된 경우 각 구성요소에 대해 세금 납부

<표 II-2>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 대상

구분	설명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포장	·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공급망 내에서 사용되며, 단독 또는 다른 포장과 조합하여 사용 · 상품을 담거나 보호·취급·제공·운반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 · 예: 생고기를 감싼 필름, 식품 보호 필름, 비스킷 포장지 등
소비자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포장	·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 상품을 담거나 보호·취급·제공·운반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 · 예: 쓰레기 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및 접시, 자판기용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출처: Packaging in and out of scope of Plastic Packaging Tax(2022.10.12.), 영국 정부 포털(www.gov.uk)

- 기한 내 플라스틱 포장을 제조·수입하였거나 제조·수입할 예정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영국 국세청(UK HMRC)에 등록 및 세금 납부
 - △향후 30일 이내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완제품)을 영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영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지난 12개월 이내에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완제품)을 영국 내에서 제조하였거나 영국으로 수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 대상에 해당
 - 기업 등록 시 △플라스틱 포장 완제품의 예상 무게(향후 12개월 내에 제조·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게, 지난 12개월 내에 제조·수입한 무게, 향후 30일 내에 제조·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게) △사업체 유형 △Companies House에 등록된 사업체 주소 △사업체 연락처 △참조번호 (회사등록번호, 국민보험번호, 고유납세자번호, 자선단체 등록번호 등) 등 제출

Ⅲ. 기타 주요국 규제 동향

1. 뉴질랜드

□ 2022년 10월부터 3단계로 구성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조치 시행

- 뉴질랜드 정부는 2018년 제정된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 「2022년 폐기물 최소화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규정¹⁵⁾」을 제정하였으며, 제정과 동시에 시행됨¹⁶⁾
- (1단계) 2022년 10월부터 특정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제공·판매 금지
 - 규제 대상은 ①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 컵개(모든 플라스틱 유형) ②일회용 플라스틱 면봉(모든 플라스틱 유형) ③분해 촉진 첨가제가 포함된 플라스틱 (플라스틱 유형7) ④특정 PVC 식품 트레이 및 용기 ⑤폴리스티렌 테이크아웃 식음료 포장재(플라스틱 유형6) ⑥발포 폴리스티렌 식음료 포장재(플라스틱 유형6)가 해당¹⁷⁾
- (2단계) 2023년 7월부터 사용 금지 품목 확대
 - 제조·제공·판매가 금지되는 대상에 ①일회용 농산물 봉투 ②일회용 플라스틱 접시·그릇·커트러리 ③일회용 플라스틱 농산물 라벨 ④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모든 플라스틱 유형)가 추가됨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며, 실리콘 빨대 등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계적 방식으로 음료 용기에 부착하거나(주스 등) 포장의 필수 부분인 빨대는 2026년 1월 1일까지 규제에서 면제함
- (3단계) 2026년 중순부터 모든 PVC 및 폴리스티렌 식음료 포장 사용 금지

15) Waste Minimization (Plastic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8

16) 뉴질랜드 환경부(<https://environment.govt.nz>)

17) 플라스틱 수지 식별 코드(RIC)에 의해 7가지 유형으로 플라스틱 분류: 유형1(PET), 유형2(HDPE), 유형3(PVC), 유형4(LDPE), 유형5(PP), 유형6(PS), 유형7(기타 플라스틱)

<표 III-1> 뉴질랜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유형

단계	규제 대상	설명
1단계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 텀러	· 한 번 또는 제한된 횟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또는 부분이 플라스틱(퇴비화·생분해성 플라스틱 포함)으로 구성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 한 번 또는 제한된 횟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쪽 또는 양쪽 끝을 탈지면이나 합성섬유가 감싸고 있고, 전체 또는 부분이 플라스틱(퇴비화·생분해성 플라스틱 포함)인 막대로 구성
	분해 촉진 첨가제가 포함된 플라스틱	·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퇴비화 또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산화 및 광분해성 플라스틱 포함)을 일컬으며, 쓰레기 봉지(bin liner), 슈퍼마켓의 농산물용 봉지(supermarket produce bags) 등을 포함
	특정 PVC 식품 트레이 및 용기	· 신선 농산물 또는 신선·냉동·보존한 상태의 육류·가금류·생선,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는 구운제품 등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PVC 또는 PVDC 용기 · 포장하는 식품과 별도로 제조 및 사전 성형한 플라스틱
	폴리스티렌 테이크아웃 식음료 포장재	· 레스토랑·카페 등에서 테이크아웃하여 구입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및 음료를 포장하기 위한 폴리스티렌 용기
	발포 폴리스티렌 식음료 포장재	· 사전 성형된 발포 폴리스티렌 제품 및 성형-충전-밀봉(FFS) 발포 폴리스티렌(EPS) 포장을 포함한 포장재로, 소매상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
2단계 (품목 확대)	일회용 농산물 봉투	· 소매상점 등에서 신선식품을 포장하기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밀봉되지 않은 비닐봉지이며, 재활용·생분해성·식물성 또는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으로 제조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그릇·커트리리	· 한 번 또는 제한된 횟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또는 부분이 플라스틱(재활용 가능·퇴비화·생분해성 플라스틱 포함)으로 구성
	일회용 플라스틱 농산물 라벨	· 가정 퇴비화(home compostable)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며, 과일이나 채소 등에 부착 · 2025년 7월 1일까지 라벨 접착제 및 수입 농산물 라벨은 가정 퇴비화 불필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 모든 유형의 플라스틱(퇴비화·생분해성 플라스틱 포함)을 포함한 일회용 빨대 · 장애 또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며, 슈퍼마켓·약국·환대시설·교육기관·자선단체 등을 통해서만 판매·제공 허용
3단계 (품목 확대)	모든 PVC 식음료 포장	· 폴리염화비닐(PVC)로 제조되어, 식품 및 음료를 담을 포장재로 판매되거나 판매용 식품 및 음료를 담은 트레이, 용기(뚜껑 여부에 관계 없음), 패킷, 그릇, 컵, 필름, 랩 등
	모든 폴리스티렌 식음료 포장	· 내충격성 폴리스티렌을 포함한 경질 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되어, 식품 및 음료를 담을 포장재로 판매되거나 판매용 식품 및 음료를 담은 트레이, 용기(뚜껑 여부에 관계 없음), 패킷, 그릇, 컵 등

*출처: 뉴질랜드 환경부(<https://environment.govt.nz>)

2. 콜롬비아

□ 2024년 7월 7일부터 콜롬비아는 플라스틱 제품 14종의 제조·마케팅·무료 제공을 금지

- 2022년 콜롬비아 정부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감소법(2022년 법률 제2232호)¹⁸⁾」 승인
 - 플라스틱 오염과 이로 인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도입
 - 2024년과 2030년 두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규제 시행
- (1단계) 2024년 7월 7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6종 사용 금지
 - 규제 대상에는 ①상품을 포장·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재사용 또는 산업용 제외) ②신문·잡지·광고·송장 등을 담은 플라스틱 봉투 및 세탁물 포장용 플라스틱 봉투 ③상품을 포장·적재·운송하거나 벌크 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상점에서 사용하는 빈 비닐봉지(롤 형태) ④음료용 믹서 및 빨대 ⑤공기 펌프용 플라스틱 지지대 ⑥면봉용 플라스틱 지지대가 해당
- (2단계) 2030년 7월 7일부터 규제 품목에 플라스틱 포장 8종 추가
 - 추가 규제 대상에는 ①사전포장되지 않은 액체를 담은 즉시 섭취용·테이크아웃용·가정 배달용 용기 또는 포장 ②일회용 식기(접시, 쟁반, 칼, 포크, 숟가락, 유리잔, 식사용 장갑) ③콘페티, 식탁보, 깃발 ④사전포장되지 않은 식사 또는 식품을 담거나 운반하기 위한 즉시 섭취용·테이크아웃용·가정 배달용 용기 또는 포장 ⑤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을 서빙·포장·분리하는 시트로, 테이크아웃용 또는 가정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것 ⑥일회용 치실 손잡이 또는 홀더 ⑦자연 상태에서 껍질이 있는 과일 및 채소, 허브, 버섯 등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포장 및 용기 ⑧채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및 라벨이 해당

18) Ley de reducción de plásticos de un solo uso(LEY 2232 DE 07 DE JULIO DE 2022)

- 재사용 가능하거나 생분해성 및/또는 퇴비화 가능한 제품, 의료용이나 건강·위생 목적의 제품 등은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함

<표 III-2> 콜롬비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유형

구분	규제 품목
1단계 (2024년 7월 7일부터)	①상품을 포장·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재사용 또는 산업용 제외) ②신문·잡지·광고·송장 등을 담은 플라스틱 봉투 및 세탁물 포장용 플라스틱 봉투 ③상품을 포장·적재·운송하거나 벌크 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상점에서 사용하는 빈 비닐봉지(롤 형태) ④음료용 믹서 및 빨대 ⑤공기 펌프용 플라스틱 지지대 ⑥면봉용 플라스틱 지지대
2단계 (2030년 7월 7일부터) ※1단계 규제 품목에서 확대	①사전포장되지 않은 액체를 담은 즉시 섭취용·테이크아웃용·가정 배달용 용기 또는 포장 ②일회용 식기(접시, 쟁반, 칼, 포크, 숟가락, 유리잔, 식사용 장갑) ③콘페티, 식탁보, 깃발 ④사전포장되지 않은 식사 또는 식품을 담거나 운반하기 위한 즉시 섭취용·테이크아웃용·가정 배달용 용기 또는 포장 ⑤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을 서빙·포장·분리하는 시트로, 테이크아웃용 또는 가정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것 ⑥일회용 치실 손잡이 또는 홀더 ⑦자연 상태에서 껍질이 있는 과일 및 채소, 허브, 버섯 등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포장 및 용기 ⑧채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및 라벨
적용 예외	①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②생분해성 및/또는 퇴비화 가능한 제품 ③100% 재활용 소재로 제조한 특정 플라스틱 제품 ④의료용이나 건강 또는 위생 목적의 제품 ⑤화학물질 또는 유해 폐기물이 들어있는 용기 ⑥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지정된 제품의 포장 ⑦동물성 단백질(육류) 또는 껍질이 없는 과일 포장에 사용되는 투명 비닐봉지 등

*출처: Ley de reducción de plásticos de un solo uso(LEY 2232 DE 07 DE JULIO DE 2022)

3. 인도

□ 2022년 7월부터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금지

-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인도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
 - 인도에서는 매년 약 1,40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 (1단계) 「2021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개정 규칙¹⁹⁾」에 따라, 유용성이 낮고 폐기물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제조·유통·비축·판매·사용 금지
 - 규제 대상은 ①플라스틱 스틱이 달린 이어버드·풍선, 플라스틱 깃발, 사탕 스틱, 아이스크림 스틱, 장식용 폴리스티렌 ②식기류(접시·컵·포크·스푼·칼 등), 빨대, 쟁반, 과자 상자 주변의 포장 필름, 초대장, 담배 용기, 100마이크론 미만의 플라스틱 또는 PVC 배너, 음료용 젓개가 해당
- (2단계) 2022년 12월 31일부터 플라스틱 봉지의 두께가 120마이크론 미만인 플라스틱 봉지의 제조·유통·비축·판매·사용 금지
 - 인도 규제 당국은 2021년 9월 30일부터 플라스틱 봉지의 두께 기준을 50~75마이크론으로 늘린 바 있음
 - 보다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함으로써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수거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19) Plastic Waste Management Amendment Rules, 2021

<표 III-3> 인도 플라스틱 사용 금지 유형

구분	규제 대상
1단계 (2022년 7월 1일부터)	①플라스틱 스틱이 달린 이어버드·풍선, 플라스틱 깃발, 사탕 스틱, 아이스크림 스틱, 장식용 폴리스티렌 ②식기류(접시·컵·포크·스푼·칼 등), 빨대, 쟁반, 과자 상자 주변의 포장 필름, 초대장, 담배 용기, 100마이크론 미만의 플라스틱 또는 PVC 배너, 음료용 젓개
2단계 (2022년 12월 31일부터)	두께가 120마이크론 미만인 플라스틱 봉지

*출처: 인도 언론정보국(<https://pib.gov.in>)

□ 2024년 7월부터 인도 찬디가르(Chandigarh)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²⁰⁾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 포장 및 제공 시 대체재 사용 권고
- 상인 및 상업시설에서 빨대, 비닐봉지, 일회용 커트러리 등 제공 시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 위반시 가중 처벌
 - 노점상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200루피(한화 약 3,278원) 부과, 2회 위반시 500루피(한화 약 8,195원) 부과, 3회 위반시 1,000루피(한화 약 1만 6,390원)의 벌금 부과
 - 상인 및 상업시설 등에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2,000루피(한화 약 3만 원), 2회 위반시 5,000루피(한화 약 8만 원), 3회 위반시 10,000루피(한화 약 16만 원) 부과
 - 이에 더하여, 반복 위반시 영업 일시중지 또는 영구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

20) Chandigarh: From July 1, violating single-use plastic ban to invite hefty fines, Hindustan Times(2024.07.01.)

IV. 결론 시사점

1. 국가별 규제 요약

<표 IV-1> 국가별 플라스틱 포장 사용 규제 요약

국가명	시행일	규제 내용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규제)	2024.07.19	· 2035년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조달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
	주별 상이	· 주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 12개 주) △생산자 책임 확대(캘리포니아 등) △플라스틱 포장재 배출원 규제(워싱턴 등)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 규제(워싱턴, 뉴저지 등) 등 시행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2022.12.20	·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식기, 식품서비스용 기구, 음료용 컵, 빨대 제조 및 수입 금지
	2023.06.20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 링 캐리어 제조 및 수입 금지
	2023.12.20	·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식기, 식품서비스용 기구, 음료용 컵, 빨대 판매 금지
	2024.06.20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 링 캐리어, 음료 용기와 함께 포장된 주름빨대 판매 금지
	2025.12.20	· 수출 목적의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식기, 식품서비스용 기구, 음료용 컵, 빨대, 음료용 링 캐리어, 음료 용기와 함께 포장된 주름빨대 제조·수입·판매 금지
캐나다 (플라스틱 발생량 및 처리량 보고 의무)	2025.09.01.	· 보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년 캐나다 연방 플라스틱 등록부에 플라스틱 발생량 및 처리량 보고 <보고 의무 대상 기업 유형> ①특정 플라스틱 수지 및 수지 공급원 제조·수입·출시업체 ②특정 경질·연질 플라스틱 포장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③산업시설·상업시설·기관시설에서 포장 및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 ④화학적 재활용·퇴비화·매립 및 기타 소각 활동 등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을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유럽연합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저감)	2030.01.01	· 운송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을 50%로 설정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 금지 대상> ①가공하지 않은 신선 과채류용 포장 ②카페·레스토랑 등에서 소비하는 식품 및 음료 포장 ③개별 포션(조미료, 소스, 크림, 설탕 등) ④숙박시설용 소형 포장된 위생용품 ④15마이크론 이하의 경량 플라스틱 봉지 ·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PFAS 사용 금지 · 재사용 및 리필 용기 사용 장려 · 2029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및 금속 음료 용기 90% 수거

국가명	시행일	규제 내용
유럽연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2021.07.03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대상> ①발포 폴리스티렌(EPS)으로 제조된 식음료 용기(뚜껑 포함) 및 컵 ②일회용 플라스틱 커트러리 ③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④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⑤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 텀러 ⑥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⑦일회용 플라스틱 풍선 스틱
	2024.07.03	· 3리터 이하의 모든 음료 용기에 일체형 병뚜껑 부착
유럽연합 (플라스틱 포장세 및 수수료 징수)	회원국별 상이	· 독일: 2026년부터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식품 용기 △봉지 및 필름 포장 △음료 용기 △음료용 컵 △경량 플라스틱 봉지 △물티슈 △풍선 △필터 담배 △폭죽에 대해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 예정 · 스페인: 2023년 1월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kg 당 0.45유로 부과 · 포르투갈: 2022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에 세금 부과, 2023년 9월부터 알루미늄 포장에 세금 부과 · 이탈리아: 2026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kg 당 0.45유로 부과 예정 · 폴란드: 2023년 7월부터 일회용 또는 재사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해 보증금 환급 제도 시행 · 네덜란드: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kg 당 1.22~1.32유로의 기여금 징수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2022.04.01	· 공급망 내에서 사용하거나 최종 소비자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포장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세금 부과 · 2024년 4월 1일부터 톤당 217.85파운드에 세율 인상
뉴질랜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2022.10.01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대상(1단계)> ①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 텀러 ②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③분해 촉진 첨가제가 포함된 플라스틱 ④특정 PVC 식품 트레이 및 용기 ⑤폴리스티렌 테이크아웃 식음료 포장재 ⑥발포 폴리스티렌 식음료 포장재
	2023.07.01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대상 확대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대상(2단계)> ①일회용 농산물 봉투 ②일회용 플라스틱 접시·그릇·커트러리 ③일회용 플라스틱 농산물 라벨 ④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2026	· 모든 PVC 및 폴리스티렌 식음료 포장 사용 금지

국가명	시행일	규제 내용
콜롬비아	2024.07.07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대상(1단계)> ①상품을 포장·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재사용 또는 산업용 제외) ②신문·잡지·광고·송장 등을 담는 플라스틱 봉투 및 세탁물 포장용 플라스틱 봉투 ③상품을 포장·적재·운송하거나 벌크 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상점에서 사용하는 빈 비닐봉지(롤 형태) ④음료용 믹서 및 빨대 ⑤공기 펌프용 플라스틱 지지대 ⑥면봉용 플라스틱 지지대
	2030.07.07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대상 확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대상(2단계)> ①사전포장되지 않은 액체를 담는 즉시 섭취용·테이크아웃용·가정 배달용 용기 또는 포장 ②일회용 식기(접시, 쟁반, 칼, 포크, 숟가락, 유리잔, 식사용 장갑) ③콘페티, 식탁보, 깃발 ④사전포장되지 않은 식사 또는 식품을 담거나 운반하기 위한 즉시 섭취용·테이크아웃용·가정 배달용 용기 또는 포장 ⑤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을 서빙·포장·분리하는 시트로, 테이크아웃용 또는 가정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것 ⑥일회용 치실 손잡이 또는 홀더 ⑦자연 상태에서 껍질이 있는 과일 및 채소, 허브, 버섯 등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포장 및 용기 ⑧채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및 라벨
인도	2022.07.01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대상(1단계)> ①플라스틱 스틱이 달린 이어버드·풍선, 플라스틱 깃발, 사탕 스틱, 아이스크림 스틱, 장식용 폴리스티렌 ②식기류(접시·컵·포크·스푼·칼 등), 빨대, 쟁반, 과자 상자 주변의 포장 필름, 초대장, 담배 용기, 100마이크론 미만의 플라스틱 또는 PVC 배너, 음료용 젓개
	2022.12.31	· 두께가 120마이크론 미만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2.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탈(脫)플라스틱 규제로 인해 식품 수출 시 비관세장벽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

○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이 전지구적 해결과제로 부상

- 2020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배출량은 5,21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절반 이상(57%)은 가정이나 쓰레기장 등에서 환경 규제 없이 소각되고 나머지(43%)는 자연에 그대로 배출되는 상황²¹⁾
-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2024년까지 세계 최초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에 합의하였으며, 유엔 회원국간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INC) 진행 중 (2024년 4월 캐나다에서 제4차 협상 진행)

○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 사용 규제 및 식품 기업에 대한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요구 확대

-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주요 플라스틱 배출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 사용 규제가 속속 도입되는 상황
- 규제 유형은 크게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 △플라스틱 포장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세금 및 수수료 부과 등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구분
- 공통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폐기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접시 △커트러리 △비닐봉지 △빨대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

○ 국가별 상이한 플라스틱 포장 사용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 국가별로 규제 내용 및 시행 일정이 상이하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경제적 비용 발생
- 수출 전 국가별로 사용을 금지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포함 여부를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해 친환경 포장

21)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5200만톤...‘20%’ 차지한 1위 배출국은?, 경향신문(2024.09.05.)

재 전환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등 수입업체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

- 플라스틱 포장 사용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인식 변화 또한 수출 시 고려요인으로 작용
 - 식품 기업의 환경 책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강화되었으며 친환경 포장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확대되며, 해외시장 진출 시 경쟁력 확보 수단의 일환으로 친환경 포장 채택이 고려되기도 함
 - 스탯ISTA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64%)와 브라질(57%), 중국(56%), 멕시코(54%), 영국(52%) 등 주요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포장이 지속가능한 소비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응답 22)

□ 국가별 규제 사전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주요 수출상대국의 규제 요구사항과 시행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 마련
 -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은 단계별 규제를 도입하여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규제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확대 및 강화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

22) 2023년 6월 국가당 18세 이상 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출처: Consumers See the Need for Eco-Friendly Packaging, Statista Consumer Insight)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미국 주의회협의체(www.ncsl.org)
2	미국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https://calrecycle.ca.gov)
3	미국 워싱턴주 생태부(https://ecology.wa.gov)
4	미국 뉴저지주 홈페이지(www.nj.gov)
5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
6	유럽연합 의회(www.europarl.europa.eu)
7	영국 정부 포털(www.gov.uk)
8	뉴질랜드 환경부(https://environment.govt.nz)
9	콜롬비아 외무부(www.cancilleria.gov.co)
10	인도 언론정보국(https://pib.gov.in)
11	[미국]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12	[캐나다] 식품 포장 및 용기 플라스틱에 대한 신고 의무화,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13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채택,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14	[유럽] 플라스틱 아웃! 내년 7월부터 일체형 병뚜껑 부착 의무,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15	유럽 4국(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플라스틱 세금 규정 비교,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16	영국, 플라스틱 포장 세금(Plastic Packaging Tax, PPT) 시행,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17	[뉴질랜드] 플라스틱 금지법의 2단계 금지 조치 시행(2023년 7월 1일부터),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18	[콜롬비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19	Plastic Taxation in Europe: Update 2024, WTS Global(https://wts.com)
20	Ley 2232 de 2022: Adiós a algunos plásticos de un solo uso en Colombia!, Universidad EAN(2024.07.08.)
21	India banned single-use plastics almost 2 years ago. Did it work?, South China Morning Post(2024.04.29.)